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818
----------	-------

발의연월일 : 2025. 12. 3.

발 의 자 : 이헌승 · 서일준 · 조지연
박덕흠 · 김선교 · 이성권
김상훈 · 김 건 · 윤상현
최형두 · 강선영 · 서명옥
엄태영 · 박준태 · 박성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제3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75세”를 각각 “60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진료) ① ~ ⑥ (생 략)	제42조(진료) ① ~ ⑥ (현행과 같 음)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 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 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⑦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u>75</u> <u>세</u> 이상인 사람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 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 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 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 ----- <u>60</u> <u>세</u> -----. ----- ----- ----- ----- -----.
4. 제16조의3제1항의 6 · 25전몰 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 람 중 선순위자로서 <u>75세</u> 이 상인 사람. 이 경우 같은 순위	4. ----- ----- ----- <u>60세</u> --- -----.

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 을 준용한다. ⑧ (생 략)	----- -----. ⑧ (현행과 같음)
---	--